

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의 포괄적인 관리·운영을 가능하게 하고, 이용시간 및 휴관일,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이용시간, 휴관일 규정 신설
-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생활관 사용료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구미시

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의 포괄적인 관리·운영을 가능하게 하고, 이용시간 및 휴관일,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이용시간, 휴관일, 사용료와 생활관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시간, 휴관일, 사용료 등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